

2007. 5. 2(수) 10:00



제137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
제 2 차 본 회 의

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
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 2

2.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제3차) 5

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4. 23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문화관광과)
- 다. 회부일자 : 2007. 4. 2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. 5. 1(제1차 총무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5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2006. 2.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2007. 1. 1부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함에 따라,
- 수승대 관광지내 시설이용료(썰매장)의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자구 수정(안 제4조)
 - 청소년, 군인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(대학생·방위병 삭제), 어른 삭제
- 썰매장 이용권 및 시설이용료 징수기준 중 썰매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(별지 제4호 서식, 별표 2)
 - 부가가치세 포함된 요금임을 표기
- 법제처의 “법령입안 심사기준” 개정에 따른 제명 띄워쓰기와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를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함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안 상 룡)

-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됨에 따라 수송대관광지 내 시설이용료(썰매장)의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, 아울러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(정의)에 있어서 기존의 용어정리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청소년, 군인에 대한 용어는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존의 대학생과 방위병을 삭제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부분 수정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,
 - 안 제11조(위탁징수) 제2항 별표2(시설이용료)의 썰매장 이용료 안내 및 썰매장 이용권에 ‘이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’고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뭇만큼 시설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적인 부분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
-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제3차)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4. 23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재무과)
- 다. 회부일자 : 2007. 4. 2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. 5. 1(제1차 총무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9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개정이유

- 낙동강 수계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적기영농 실현
-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절감 효과 거양

나. 주요골자

- 취득재산의 표시

(단위 : m²/천원)

구 분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물건및지목	면적	예정금액 (추정가액)	비고
취득	건물	거창읍 대평리 1360-1번지	건물	264	80,000	농기계임대사업보관창고
	토지	거창읍 대평리 1360-1번지	토지	1,229	93,000	농기계임대사업보관창고

- 처분재산의 표시

(단위 : m²/천원)

구 분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물건및지목	면적	예정금액 (추정가액)	비고
처분		해당없음				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안 상 룡)

- 동 사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요구가 계속증대 됨에 따른 수요충족과 낙동강 수계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적기 영농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계법인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0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취득 시 시·군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1,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임.
- 또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동 사업이 낙동강 수계기금(1,460,195천원)중 2007년도 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일부사업으로써 사전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2006. 12. 27일 신청하여 2007. 3. 20일 승인됨에 따라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·제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.
- 동 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675,900천원 (낙동강수계기금 666,000천원, 도비 4,950천원, 군비 4,950천원)으로써
 - 세부사업계획은 토지취득(327평) 93,000천원, 보관창고신축(80평) 80,000천원, 농기계구입(25종 44대) 382,900천원, 기타 운영장비 및 부대시설(3종 6대) 120,000천원으로 파악되었음.

-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과 병행하여 기존 보유한 트랙터 등 37종 73대로 농기계 무상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,
 - 고가의 농기계를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이 구입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운 부분과
 - 많은 영세한 농민의 요청과 군수 공약사업으로 인하여 금번에 농기계 25종 44대를 추가로 구입 확대하면서 동 사업을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담시켜 꼭 필요한 농업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

-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농업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으며,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